

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(요약)

2020.3

유가증권시장본부
기업지원부

※ 개정부분은 「붉은 글씨, 이탤릭체, 밑줄」로 표시

① 공통 개정사항

1. 세부원칙 단순화

- 하나의 세부원칙에 하나의 설명 주제가 제시되도록 하여 보고서 기재 및 이용 편의성 제고
- (개정전) 23개 세부원칙 ⇒ (개정후) 27개 세부원칙

2. 세부원칙별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 부여

- 각 세부원칙은 상세한 기재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나, 별도의 구분번호가 부재하여 기재누락 여부의 확인 등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

② 세부원칙별 주요 개정사항

1. 「I. 개요」 관련

- 보고서 이용자의 기업에 대한 기본 이해 제고를 위해 기업 개요 정보 확충

2. 「세부원칙 1-①」 관련

- 감사위원(감사)의 주주총회 출석란 추가(표1-①-1)

3. 「세부원칙 1-③」 관련(기존 「세부원칙 1-②」 관련)

- 주주제안권 관련 사항에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관련 사항도 설명 대상으로 추가

4. 「세부원칙 1-④」 관련(기존 「세부원칙 1-③」 관련)

- 배당정책 위주의 설명 대상을 주주환원정책 전체로 확대

5. 「세부원칙 3-①」 관련

- 필수기재사항 중 “이사회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” 항목 삭제
 - (이유) 제도적 장치의 의미가 불분명하고, 다른 세부원칙(4-①, 7-①)에서 유사항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
- 필수기재사항에 “상법 등에서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심의·의결사항 존재여부 등”을 추가
 - (이유) 이사회 권한을 단순히 나열만 하고 있어 차별성 확인 불가하여 내부규정상 이사회 권한뿐 아니라 관련 법상 의무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여부(심의·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)에 대한 구분설명, 도입 이유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명 추가

6. 「세부원칙 3-②」 관련

-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필수기재사항을 제시
 - (이유) 예시없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관련 법상 선임절차 또는 유고시 대리 순서만 기재하는 문제 해소 필요

7. 「세부원칙 4-①, ②」 관련

- 이사 또는 이사회內 위원회 위원의 성별 정보 추가
- 이사 개개인의 전문성 등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수 기재사항에 “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” 추가

8. 「세부원칙 4-③」 관련

- 재선임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실히 제공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당 정보 제공 여부 기재시 사업보고서 기재 방법과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

9. 「세부원칙 4-④」 관련

-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전력자의 이사 등 선임 여부를 설명할 때, 대상 위법 행위를 추가
 - 횡령, 배임 ⇒ 횡령, 배임,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

10. 「세부원칙 5-①」 관련

- 필수기재사항에 “6년(계열회사 포함 9년)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현황 및 그 사유” 추가(표5-①-2)

11. 「세부원칙 5-③」 관련(기존 세부원칙 5-② 관련)

- 필수기재사항 중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 여부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는 제외됨을 명시

12. 「세부원칙 6-①, ②」 관련

- 사외이사의 재선임 및 보수 결정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명확화

13. 「세부원칙 7-①」 관련

- 이사회 개최내역 표(7-①-1)를 사업보고서 양식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표 작성 편의성 제고

14. 「세부원칙 7-②」 관련

- 개별 이사의 연도별 출석률 및 안전 찬성률 기재시(표 7-②-2) 최근 3개년 평균 출석률 및 찬성률 기재란 추가

15. 「세부원칙 10-②」 관련

- “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”를 필수기재사항에 추가

③ 핵심지표 준수현황 작성기준 관련 주요 개정 사항

1.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

- 기간 산정기준일이 소집공고일임을 명시

2.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

- 주주총회 집중일 정의 제시

3.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

- 상법상 선임절차 준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, 후보의 선정 기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시

4.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

- 내부통제정책의 범위 명확화

5.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

- 관련 정책의 수립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존재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

6.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

- 총 근속기간을 산정기준으로 명확히 제시

7.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

- 단순 안전 설명은 교육의 범위에서 제외

8. ⑫ 내부감사부서(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)의 설치 관련

- 내부감사부서 등의 정의 및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

9.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관련

-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 중 회계 또는 재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 명확화